ESG 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의사결정에 ESG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1조의 내용과 같이 회사의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심의 및 검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세 계획, 이해관계자의 니즈, 관련 위험 분석 및 사업기회도출 등 부의된 사안의 ESG관점에서의 적합성 및 실행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구성)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수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Copyright 2018. Lotte Chemical. All Rights Reserved.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만료·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 6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5조 제3항 및 제5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6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하여 회의 개최일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

Copyright 2018. Lotte Chemical. All Rights Reserved.

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제11조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 10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의 안건

(1)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2) 주요 ESG 단체나 기구 등의 가입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4) 사회공헌의 추진방향,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 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ESG 경영 전략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또는 채권 발행

2. 심의 안건

(1) 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 되는 안건
- 안전 / 기후 / 폐기물 / 자원선순환 전략 실행, 지배구조 개선 등

3. 보고 안건

(1) ESG 경영 전략 실행 성과

(2) 중대한 리스크 대응 현황

Copyright 2018. Lotte Chemical. All Rights Reserved.

(3)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

- ESG 외부 평가 / ESG 단체나 기구 대응 / 이해관계자 대응 등

② 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SG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의견청취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3 조(의사록)

간사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4 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ESG경영부문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ESG경영팀이 위원회 및 간사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Copyright 2018. Lotte Chemical. All Rights Reserved.